

1. 개정이유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19.12.3) 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민원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며, 변경신고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용업 세부 정의규정이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함(안 제3조의2제1항, 제14조제2항, [별표1], 별지 제1호서식)

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도 면허부여가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7호서식)

다. 영업신고·변경신고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급되는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업종에서 목욕장업으로 변경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

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항, 제3조의2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라. 상속에 의한 영업자 지위승계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을 완화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4 제1항·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마.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의4 제3항)

바. 복수 미용업을 운영하는 영업주가 각각의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주된 업종에 해당하는 위생교육만 이수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위생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함(안 제2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및 제4호”를 “· 제3호의3 및 제4호”로 하고,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6호 중 “영 제4조제2호”를 “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하고, 제3항 각호 이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조의4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속의 경우 : 해당 영업의 상속인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제3조의4 제2항제1호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통해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의4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③ 제1항에 따라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영업을 양도하거나 인수·합병당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이수증명서”를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부 칙

제14조제2항제1호 중 “영 제4조제2호”를 “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 시 주 업종에 해당하는 위생교육시간을 이수하면 당해 연도에 해당되는 위생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1] I. 일반기준. 제2호 가목 중 “영 제4조제2호”를 “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 --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② ----- ----- -----

다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1. ~ 3의2. (생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설>	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의2(변경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의2(변경신고) ①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신설> 제9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③ 제1항에 따라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영업을 양도하거나 인수·합병당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①-----		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이수증명서 1부 3.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14조(업무범위) ① (생략)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면허를 받은 자: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영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 2. ~ 6. (생략) ③ (생략) 제23조(위생교육) ①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은 3시간으로 한다.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업무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 ----- -----: 법 제2조제1항제5호 ----- 2.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위생교육) ① ----- -----.
--	---	--	---	--

(신설)

[별표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I.일반기준

1. (생략)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
가.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시설이 선·줄 등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
나. ~ 다. (생략)

다만,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 시 주 업종에 해당하는 위생교육 시간을 모두 이수하면 당해 연도에 해당되는 위생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I.일반기준

1. (현행과 같음)

2. -----

-----.

가. 법 제2조제5호 -----

나. ~ 다.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3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영업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소재지

영업의 종류

전화번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에 확인을 실시합니다.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수료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3 -

- 14 -

(뒤쪽)

신고안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숙박업(일반), 2. 숙박업(생활), 3. 목욕장업, 4. 이음업, 5. 일반미용업, 6. 피부미용업 7. 네일미용업
8. 화장·분장미용업 9. 종합미용업 10. 세탁업, 11. 건물위생관리업

<적용제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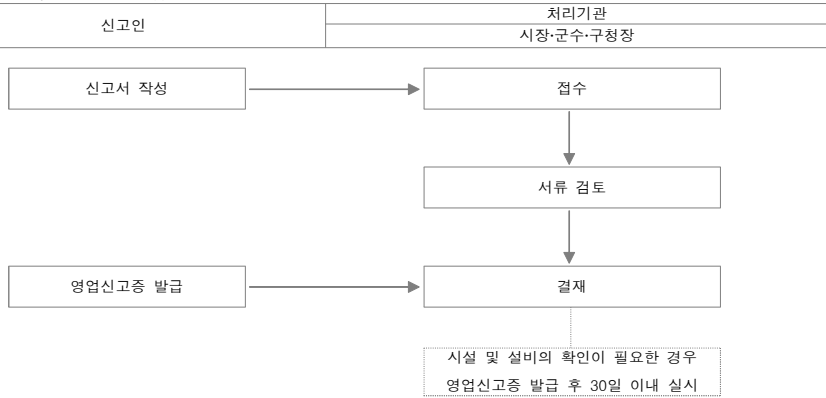
1. 숙박업 적용제의 대상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 시민박업용 시설
2. 목욕장업 적용제의 대상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숙박업 적용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유의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업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3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업종의 변경				
분 실 사 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면허증(이음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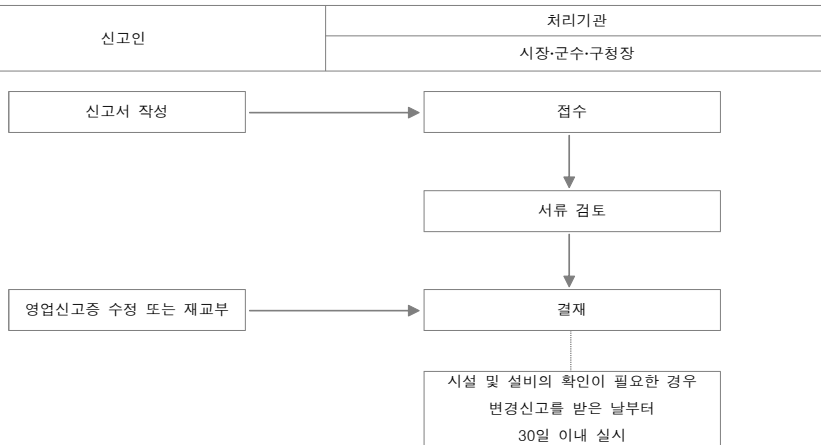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 성명의 변경은 신고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된 공동영업자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개명으로 단순히 성명이 바뀐 경우를 의미하며, 신고되지 아니한 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업종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을 의미하며, 그 외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새로운 업종으로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는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2.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는 위반 차수에 따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7. 28.>

(앞면)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①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②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④ 신고번호	⑤ 승계사유		☐ 영업양도 ☐ 상속 ☐ 그 밖의 사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하는 경우 또는 가족이 아닌 자가 상속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에 따른 승계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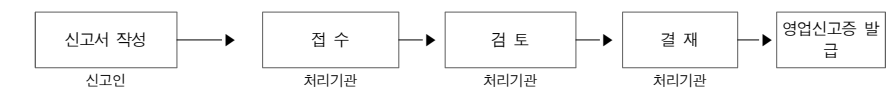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및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일자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공중위생 관리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2) 양도·양수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양수인 성명
주소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9. 27.>

()면허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졸업학교명	졸업연월일		
	(학과명:)	자격번호		
국가기술자격명 []	이용사	자격등록일		
	[] 미용사(종합)			
[] 미용사(일반)				
[] 미용사(피부)				
[] 미용사(손톱·발톱)				
[] 미용사(화장·분장)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2.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5.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전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 × 4.5cm) 2장	수수료 5,5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학점은행정학위증명(신청인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각 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안내

<업무범위(「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
2.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4호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얼굴 등 신체의 화장·분장
3.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한 자
 - 가. 2008. 1. 1. ~ 2015. 4. 16. 기간 중 자격취득자: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나. 2015. 4. 17. ~ 2016. 5. 31. 기간 중 자격취득자: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 다. 2016. 6. 1. 이후 자격취득자: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4. 미용사(피부) 자격을 취득한 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5. 미용사(손톱·발톱) 자격을 취득한 자: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6. 미용사(화장·분장) 자격을 취득한 자: 얼굴 등 신체의 화장·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결격사유(「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이용자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결핵환자를 말합니다. 다만 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합니다)
5.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유의사항

1. 이용자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이종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합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3.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에 한정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하는 자는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